

수 신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유예 대상기관(160개소)

참 조 행정관리자

제 목 요양병원 9인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유예 관련 안내

1.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531('21.12.24.)

2.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 9인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(고시 제2019-182호)과 관련하여 요양병원 환자군 중 의료고도 이상이거나 특정기간 환자 중 폐렴, 패혈증 등으로 담당의사의 판단 하에 집중 간호·관찰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이 충족하는 기관의 9인 이상 병실에 입원한 경우, 2022년 6월 30일까지 9인 이상 입원료 감산 유예함을 본 협회로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◎ 아 래 ◎

가. 기관 기준

-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인증 결과 ‘인증’ 또는 ‘조건부 인증’ 획득 기관
- 의사 및 간호인력은 각 해당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상의 1등급에 해당하는 기관

나. 병실 기준

- 입원실의 면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[별표 4]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서 정한 면적을 유지하여야 함
-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- 해당 병실 운영을 위한 무정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함
 -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을 갖추어야 함
 - 3병상 당 1대의 산소포화도, 맥박수, 호흡수를 감시할 수 있는 환자감시장치를 비치하여야 함
 -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함
 - 병상마다 비상연락장치를 비치하여야 함

다. 비교

- 감산유예를 적용받는 기관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상기 가, 나,의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염예방관리와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

붙임 :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유예 대상기관 1부.

※ 붙임 자료는 [협회 홈페이지-정보마당- 협회 공지사항 또는 심평원 홈페이지]에서 확인. 끝.

대한요양병원협회장



답 당	박신후	과 장	박찬현	국 장	최봉주	회 장	기평석
협 조				참 조			
시 행	요양병협 제2021 - 274호 (2021. 12. 27.) 접 수			- (2021. . .)			
우	04165	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, 1504호 (마포동, 현대빌딩)			http://www.k-cha.co.kr		
전화	02)719-5678(내선7)		전송	02)719-5679		kagh@kagh.co.kr	공개